

#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이유서

의안번호	149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2. 11. 3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 1. 개 정 이 유

'92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(내무부 92. 2월)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에 대한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,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 요 골 자

### ○ 중요물품 범위 조정

현행 “단가 50만원 이상 물품”에서 “정수물품”으로 한정하여 중요물품의 범위를 조정(조례안 제11조의 2)

### ○ 불용품 감정 기준금액 상향조정

불용품 감정기준 금액을 현행 “단가 300만원 이상의 물품”에서 “500만원 이상의 재활용 가능물품”으로 상향조정(조례안 제17조 제4항)

## 3. 관 계 법 령

○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

○ 내무부 조례개정준칙 시달